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부승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.

발 의 자 : 부승찬 · 문진석 · 박선원
한준호 · 문대림 · 박정현
장철민 · 손명수 · 김문수
김한규 · 안태준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-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,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·안보·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 산업이 되었음.

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K-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 산업 육성·수출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명시된 ‘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 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,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,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

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6조제2항, 제9조제5항,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6조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03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”을 “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, 제32조의4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”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국방기술품질원장”을 “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·국방기술품질원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국방기술품질원”을 “국방기술진흥연구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관한 지원
2.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·평가 및 사후관리
3.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

③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제26조제2항 중 “국방기술품질원의 장”을 “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, 국방기술품질원의 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관한 종전의 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방위산업 실태조사) ① 방 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 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위산업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 다)를 할 수 있다.	제6조(방위산업 실태조사) ① (현 행과 같음)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방산 업체등, 「방위사업법」 제3 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 관 및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, 이 법 제19조 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 체,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 제조합, 「국방과학연구소 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, 「방위사업법」 제32조에 따 른 <u>국방기술품질원</u> 및 그 밖 의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,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32조에 따 른 <u>국방기술품질원</u> , 제32조의 4에 따른 <u>국방기술진흥연구소</u> ----- ----- -----

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국방부장관·방위사업청장·각군 참모총장·국방과학연구소장·국방기술품질원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8조(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)

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~ 11. (생략)

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-----.

제9조(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국방기술진흥연구소
장·국방기술품질원장-----

-----.

제18조(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)

① -----

-----국방기술진흥연구소-----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관한 지원

<신 설> 제2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<u>국방기술품질원의 장</u>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<u>2.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·평가 및 사후관리</u> <u>3.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</u> ③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 제2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, 국방기술품질원의 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